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실(국)	담당 부서(과)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처리과 공통		공통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대통령 행사 세부 일정 관련 문서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3. 「국민제안규정」 제7조에 따라 제안자가 비공개 요구한 제안의 내용 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대상 공무원에게만 근무성정평정 결과 공개(그외 비공개) 5.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6.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서류 7. 「통계법」 제27조의 2에 따른 공표 전 통계자료, 제33조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